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가야산 오토캠핑장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코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야산 오토캠핑장 준공에 따른 시설사용료 항목 추가(안 제4조)

- 2019년 5월 가야산 오토캠핑장 시설준공

나.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용어 정비 (안 제6조)

-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관광진흥법」제3조, 제20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 아님[기획감사실-2698(2019.3.19.)]

라. 성별영향평가 : 개선 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9611(2019.3.18.)]

마. 입법예고 : 2019. 4. 11. ~ 5. 1.(20일간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1급부터 3급까지”를 “심한”으로 한다.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야영장 시설사용료(제4조 관련)

(1일 기준, 단위 : 원)

구 분	규 격	사용기준	기준인원 및 기준차량	사 용 료		비 고
				성수기 (7월~8월)	비수기 (1월~6월, 9월~12월)	
오토캠핑장	8m × 8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	8m × 9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	10m × 10m	1면/1일	5인/1대	30,000	25,000	
캠핑사이트	6m × 7m	1면/1일	5인/1대	13,000	10,000	
	8m × 10m	1면/1일	5인/1대	18,000	15,000	
테크사이트	6m × 6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카라반	6인용	1대/1일	6인/1대	160,000	100,000	
글램핑	5m × 6m	1면/1일	5인/1대	160,000	100,000	

비고

1.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.
2.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,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.
 - 1시간 초과 2시간까지: 1일 사용료의 20%
 - 2시간 초과 4시간까지: 1일 사용료의 40%
 - 4시간 이후: 1일 사용료의 100%
3.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.
 - 당 일 : 5,000원
 - 1박 2일 : 10,000원
 - 2박 3일 : 15,000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.	제6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한 면만 적용한다.	2 .-----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	나. ---------- 심한 ----------
다. ~ 사. (생 략)	다. ~ 사. (현행과 같음)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사용료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규 격	사용 기준	기준인원 및 기준차량	사 용 료		비 고
				성 수 기 (7월~8월)	비 수 기 (1월~6월 9월~12월)	
오토캠핑장	8m×9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	10m×10m	1면/1일	5인/1대	30,000	25,000	
캠핑사이트	6m×7m	1면/1일	5인/1대	13,000	10,000	
	8m×10m	1면/1일	5인/1대	18,000	15,000	

1.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.

2.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,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.

- 1시간 초과 2시간까지: 1일 사용료의 20%
- 2시간 초과 4시간까지: 1일 사용료의 40%
- 4시간 이후: 1일 사용료의 100%

3.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.

- 당 일 : 5,000원
- 1박 2일 : 10,000원
- 2박 3일 : 15,000원

[별표 1]

야영장 시설사용료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규 격	사용 기준	기준인원 및 기준차량	사 용 료		비 고
				성 수 기 (7월~8월)	비 수 기 (1월~6월 9월~12월)	
오토캠핑장	8m×8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	8m×9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	10m×10m	1면/1일	5인/1대	30,000	25,000	
캠핑사이트	6m×7m	1면/1일	5인/1대	13,000	10,000	
	8m×10m	1면/1일	5인/1대	18,000	15,000	
테크사이트	6m×6m	1면/1일	5인/1대	25,000	20,000	
카라반	6인용	1면/1일	6인/1대	160,000	100,000	
글램핑	5m × 6m	1면/1일	5인/1대	160,000	100,000	

1.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.

2.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,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.

- 1시간 초과 2시간까지: 1일 사용료의 20%
- 2시간 초과 4시간까지: 1일 사용료의 40%
- 4시간 이후: 1일 사용료의 100%

3.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.

- 당 일 : 5,000원
- 1박 2일 : 10,000원
- 2박 3일 : 15,000원